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가합5236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씨엘

담당변호사 조상준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김철한

변론 종결 2021. 11. 23.

판결 선고 2022. 2. 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784,854원 및 그 중 220,573,405원에 대하여 2021. 3. 16.부터 2021. 4. 19.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6. 접수 제1359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자백 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1)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는 2017. 3. 23. 보증금액 2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8. 3. 22.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는데,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인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금액은 218,7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21. 3. 19.로 최종변경되었다.

- 2) 주식회사 A는 2018. 3. 27.까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2억 8,800만 원을 변제기 2021. 3.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B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3) 주식회사 A가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2021. 1.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1. 3. 16. 중소기업은행에 220,573,4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 1) 피고 C는 2011. 11. 4.경부터 2016. 10. 17.까지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2018. 6. 16. 기준 대여금 합계액은 1억 3,500만 원이다.
- 2) B과 피고 C는 2020. 6. 16. 'B이 피고 C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C의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억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 3) 피고 C는 2020.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6. 16. 접수 제13595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B은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시가 2억 3,0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1채(서울 마포구 D건물, E호)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위 오피스텔에 관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억 6,5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 F캐피탈에 대한 34,972,000원 상당의 보증채무, G은행에 대한 37,389,000원 상당의 보증채무,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 대한 119,11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 H캐피탈에 대한 63,516,000원 상당의 보증채무 등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갑 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1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 의하면, B과 피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0. 6. 16. 당시에는 비록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인 2017. 3. 23. 이미 위 구상금 채권의 성립 기초가 된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불과 7개월여만인 2021. 1. 21. B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A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3. 16. 주식회사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한 이상,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채무자로부터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재산을 제공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나. 판단

1) 앞서 살펴본 기초 사실의 인정 근거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B은 적극재산 가액을 훨씬 넘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보유한 적극재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채권자 중 1인인 피고 C에게 대물변제를 할 목적으로 피고 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또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2)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정당하게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와 B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특수한 관계임이 분명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B은 수년간 피고 C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빌려가고도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연 피고 C에게 대물변제를 제안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 역시 원고를 비롯한 B의 다른 채권자들이 오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설 것에 대한 우려에 근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 C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의 취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 C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 C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6. 접수 제1359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원신

판사강건우

판사조아람

별지

1)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는 이하 피고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